#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안내

#### ● 안전검사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제도
  -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1항)

#### ●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

####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한 것)로서 정격하중 2톤이상인 것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 안전검사 신청 및 절차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신청 · 절차	내용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제출 (검사기관이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지역사무소에 신청 가능)					
igtriangledown						
민원접수	•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민원접수 담당부서를 통해 민원접수					
igtriangledown						
수수료 입금	•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신청인- 수수료 산정 및 입금 안내- 입금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nabla$						
안전검사일 통지	•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안전검사 실시일 확정 후 유선 통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으로 7일이내 통지					
abla						
안전검사 실시	•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신청인이 요청한 검사기관 지정검사장에서 안전검사 실시 ※ 출장검사 가능: 신청인이 지정검사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하중시험용 분동 등을 준비하고, 작동시험 등이 가능한 충분한 검사장소를 확보하여 3대 이상 신청 시 출장검사는 가능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 전국 지회 모든 곳에서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nabla$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 ①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
  -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②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
  - 2018년 4월 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등록 차량
  - 2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④ 2015년 1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
  -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 안전검사 수수료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부가세	납부금액
이동식 크레인	59,000원	5,900원	64,900원
고소작업대 54,000원		5,400원	59,400원

## ● 안전검사 주요 검사 항목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주요검사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활선작업용 고소작업대로서 작업대 정격하증이 200kg이하이고, 바닥면적이 1m²이하인 경우 하중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위반 시 과태료

주 요 위 반 내 용	과 태 료	관 련 근 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 합격한 것임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3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 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